

2022.8.18.부터 시행

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



제도개요

개요

2021.8.17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

※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,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

시행

2022. 8. 18. 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

*상시근로자 50명 이상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): 2022.8.18. 시행

상시근로자 50명 미만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: 2023.8.18. 시행

제재대상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)

■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

1. 상시 근로자* 20명 이상(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) 사업장
2. 7개 직종 근로자**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

*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

** ①전화상담원, ②돌봄서비스 종사원, ③텔레마케터, ④배달원,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, ⑥아파트경비원, ⑦건물 경비원
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, 별표 21의2

1.크기

- 가. 휴게시설의 **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**로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(이하 이 표에서 “공동휴게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**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**으로 한다.
- 나. 휴게시설의 **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.1미터 이상**으로 한다.
- 다.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**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**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.
- 라.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**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**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.

2.위치
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
- 가. 근로자가 **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**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**공동휴게시설**은 각 사업장에서 **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** 있어야 한다.
- 나.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.
 - 1)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 - 2)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
 - 3)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

3.온도

적정한 온도(18℃ ~ 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**냉난방 기능**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4.습도

적정한 습도(50% ~ 55%). 다만,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**유지**할 수 있는 **습도 조절 기능**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5.조명

적정한 밝기(100럭스 ~ 200럭스)를 유지할 수 있는 **조명 조절 기능**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- 6. **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**가 가능해야 한다.
- 7. **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**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- 8. 마실 수 있는 **물이나 식수 설비**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.
- 9. **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**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.
- 10. 휴게시설의 청소·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
- 11. 물품 보관 등 **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** 한다.

※ 비교
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**휴게 시설 설치·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.**

- 가. **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**: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
- 나. **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**: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
- 다. **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**하는 경우: 제4호의 기준